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83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2208751)	2025.03.10.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임호선의원 (2208982)	2025.03.17.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백선희의원 (2209818)	2025.04.15.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민형배의원 (2209979)	2025.04.21.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김기현의원 (22010875)	2025.06.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백혜련의원 (2211541)	2025.07.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 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 4. 부대 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로 하고, “등에”를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를 “지원실시기관의”로, “직원을 제16조제2항에”를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

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66조의10에”를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p> <p>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④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p>
<p>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생 략)</p> <p>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p>	<p>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  
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원실시  
기관의 직원을 제  
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  
조제2항에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p><u>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66조의 10에</u>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p>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58조의 2에</u>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u>제66조의 10에-----</u> -----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